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95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유의동 · 박성훈 · 김기현
박정하 · 최형두 · 백종현
김선교 · 고동진 · 조은희
한지아 · 김상훈 · 김 건
한동훈 · 박수민 · 이준석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u>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u>」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 --. ----- 「<u>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u>」----- -----.</p>